

1. 개정이유

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표시 신청 절차를 규정하고, 표시 신청 및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이를 표시한 자와 일정비율 이상의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제품·용기에 사용하여야 하는 자를 보고 및 검사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20856호, 2025. 3. 25. 공포, 2025. 9. 26. 시행)됨에 따라,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표시 신청과 사용비율의 적정 표시 및 의무사용 이행여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표시를 위한 신청절차와 표시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제출자료를 규정(안 제23조의4)
- 나. 보고 및 검사 등에 필요한 경우로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적정 표시여부 및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이행여부를 규정(안 제26조제15호 및 제16호 신설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-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의4제1항 중 “법 제33조의2”를 “법 제33조의2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33조의2”를 “법 제33조의2제2항”으로, “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다음”을 “다음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“제2항에 따른”을 “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”로 한다.

②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표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재생원료 사용제품 산출 기초자료
2. 재생원료 거래 및 제조신고서
3. 재생원료 수불 관리대장
4. 재생원료 사용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 및 그 부속서류

제26조에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5.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제품·용기에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적정 표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
16.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
별지 제2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
		00일
신청인	상 호	법인등록번호
	대표자 성명	사업자등록번호
	주 소 (전화번호:)	
신청내용	제 품 · 용 기 종 류	재생원료 종류 및 사용량(kg)
	재생원료 사용 표시 비율(%)	국내외 인증서 발급기관 및 유효기간

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
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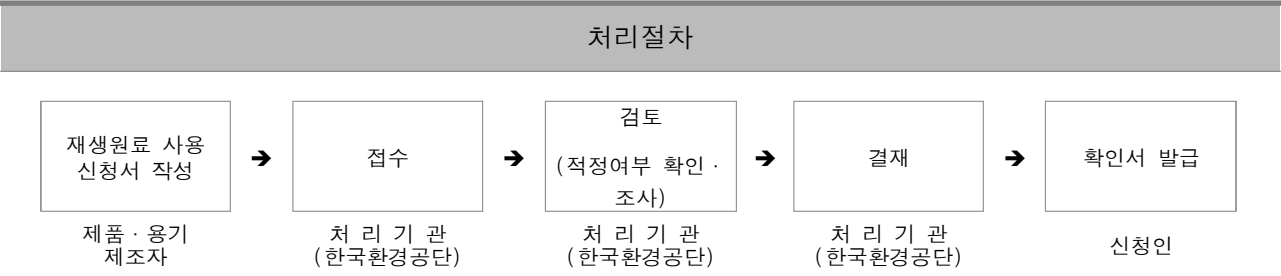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

첨부서류	1. 세금계산서, 거래명세서 등 재생원료 사용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. 제품별·용기별 재생원료 사용량 및 최종 제품생산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. 국내외 인증기관으로부터 재생원료 사용인증을 받은 경우 그 인증서 및 부속서류 1부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3조의4(재생원료의 비율표시 등) ① <u>법 제33조의2</u> 에서 “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”이란 별표 12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. <u><신 설></u>	제23조의4(재생원료의 비율표시 등) ① <u>법 제33조의2제1항</u> ----- ----- -----. ② <u>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표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</u> <u>에 제출해야 한다.</u> 1. <u>재생원료 사용제품 산출 기</u> <u>초자료</u> 2. <u>재생원료 거래 및 제조신고</u> <u>서</u> 3. <u>재생원료 수불 관리대장</u> 4. <u>재생원료 사용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 및 그 부속서류</u> ③ <u>법 제33조의2제2항</u> ----- ----- ----- <u>자</u> 는 ----- ----- -----.
② <u>법 제33조의2</u> 에 따라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제품·용기에 표시하려는 <u>자</u> 는 <u>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아</u>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할 수 있다. 1. ~ 3. (생략) ③ (생략)	③ <u>법 제33조의2제2항</u> ----- ----- ----- <u>자</u> 는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④ (현행과 같음)

④ 제2항에 따른 재생원료 사용
비율 확인 절차 및 표시방법 등
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
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26조(보고 및 검사 등) 법 제36
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
“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
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~ 14. (생략)

<신 설>

<신 설>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
정한 사항 외에-----

제26조(보고 및 검사 등) -----

1. ~ 14. (현행과 같음)

15.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
제품·용기에 재생원료 사용
비율의 적정 표시를 확인하기
위하여 필요한 경우

16.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
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
자의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하
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